

# 외국의 PL법제도 운영과 동향④

## 마지막회

기술교육처장 정연해



### 목 차

#### 1. 외국의 전반적 동향

#### 2. 각국의 PL법 동향

##### 2-1. 미국의 PL법

##### 2-2. 유럽의 PL법

###### 2-2-1. 영국의 PL법

###### 2-2-2. 독일의 PL법

###### 2-2-3. 프랑스의 PL법

###### 2-2-4. 이탈리아 PL법

###### 2-2-5. 네덜란드의 PL법

###### 2-2-6. 러시아의 PL법

#### 2.3 일본의 PL법

#### 2.4 중국의 PL법

#### 2.2.4 이탈리아의 PL법

이탈리아는 1988년 5월 24일에 대통령령 제244호에 의하여 EU지침에 근거하여 제조물책임에 관한 국내 규정을 제정하였고, 1988년 7월 30일부터 그 시행에 들어갔다. 이탈리아에서는 제조물책임에 관하여 전통적으로 민법의 규정에 근거한 과실 책임원칙이 적용되어 왔으나, 제조물책임에 관한 대통령령이 제정됨에 따라 무과실책임 원칙에 의한 제조물 책임이 성립하게 되었다. 이탈리아의 제조물책임 규정은 EU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세 가지의 "선택사항" 가운데 어느 사항도 선택하지 아니하고 있다. ① 제1차 농산물에 대해서는 무과실 책임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④ 동일한 결함이 있는 동일 제조물에 기인한 인적손해에 관하여 책임한도액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⑤ 제조사가 제조물을 유통한 시기의 과학 및 기술지식의 수준에 의하여 제조물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아직 예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발위험의 항변을 통하여 제조물책임이 배제되도록 되어 있다.

#### 2.2.5 네덜란드 PL법

네덜란드는 EU제조물책임지침에 근거한 제조물책임의 국내규정을 다른 EU국가와 달리 제조물책임법을 제정하지 아니하고, 민법의 개정을 통하여 정비하였다. 네덜란드 제조물책임 규정은 지난 1990년 9월 13일에 성립하였으며, 1990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EU지침 제1조와 제7조를 고려하여 규정된 네덜란드 민법 제1407a조는 제조자에게 "위험책임"을 부과하는 한편, 다만 ① 제조자가 제조물을 유통시키지 아니한 경우, ② 손해를 야기한 결함이 제조자가 제조물을 유통시킨 당시는 존재하지 아니하였거나 결함이 사후에 발생한 경우, ③ 결함이 강제적 행정규정을 준수한 사실의 결과인 경우, ④ 학문적·기술적 시기에 근거하여 제조자가 제조물을 유통시킨 시기에 결함의 발생을 발견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하여 제조자의 항변을 인정하고 있고, 또한 원재료나 부품의 제조자는 결함이 원재료 혹은 부품을 그 구성부성분으로 이용한 제조물의 설계, 제조자가 한 지시에 기인하는 경우도 제조물책임에 대한 항변을 인정한다. 그리고 "결함"은 특히 ① 제조물의 외관, ②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제조물 용도, ③ 제조물이 유통된 시기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 제조물로부터 기대되는 안전성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사후에 개량 제조물이 유통된다는 사실만에 의해서는 제조물이 결함 제조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제1407b조).

네덜란드 민법 제1407a조에서부터 제1407i조 까지에서 의미하는 "제조물"은 동산을 의미하며, 또한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구성부분 및 전기를 포함하고, 다만 미가공의 농산물·축산물·수산물 혹은 수렵물은 제조물에서 제외된다(제1407c조 제1항). "제조자"에는 최종제조물의 제조자는 물론, 원재료나 부품의 제조자, 명칭 혹은 상표 기타 표시를 통하여 제조물의 제조자로 표시한 표시제조자도 포함된다(제1407c조 제2항). 그리고 제조자의 책임과 관계없이 제조물을 판매·임대차 혹은 리스 기타 방법을 통한 영업적 행위를 할 목적으로 EU역내에 수입

한 수입업자도 제조자로 간주되며 역시 제조물의 제조자와 동일하게 제조물 책임을 부담한다(1407c조 제3항). 만일 제조자나 수입업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는 공급자가 피해자에게 적당한 기간 내에 제조자 혹은 이전의 공급자의 신분을 통지하지 아니하는 한 제조자로서 제조물 책임을 부담한다(제1407c조 제4항).

네덜란드 민법 제1407a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물 위험책임은 ① 사망이나 신체위해에 의한 인신손해, ② 제조물을 통하여 다른 물건에 야기된 재산손해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재산손해에 대해서는 통상 개인적 영역에서 소비나 사용되는 개인용 재산 혹은 프랜차이즈 이용을 포함하여 피해자에 의하여 주로 개인 영역에서 소비나 사용되는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만 제조물책임이 성립하고, 재산손해가 1,263.85 GULDEN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면책되는 특별 규정이 있다(제1407e조). 그리고 네덜란드 제조물책임규정은 동일결합제조물에 기인한 인신손해에 대한 배상한도액을 규율하지 아니하고 있다.

### 2.3.6 러시아의 PL법

러시아 및 동유럽국가 등 구사회주의 국가 중에서 제조물책임법을 제정한 국가는 현재 러시아, 평가리, 에스토니아뿐이다.

소비에트연방 해체 후 1992년 2월에 러시아연방공화국은 제조물책임에 대해서 전체 44개조로 된 러시아연방 소비자권리보호법을 제정·시행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 ① 제조물의 범위

제조물에 대한 정의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규정의 내용으로 보아 의약품으로부터 부동산이나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까지도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 ② 책임 및 면책

제품의 매도인(제조자, 도급인)은 제품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매도인이 ① 그 손해가 불가항력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는 점 또는 ② 그 손해가 본 법률이 정한 이유에 기한 점이라는 것을 입증한 때는 면책된다. 또한 매도인이 당해 손해는 불가항력 또는 소비자에 의한 사용, 보관방법의 잘못에 의해 발생한 것을 입증한 경우에도 면책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러시아 제조물책임법은 무과실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 ③ 개발위험의 항변 불 채택

제조자는 소비자의 생명, 건강 또는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과학기술지식의 수준에 따라 그 제품의 결함을 발견하는 것이 가능하였는가 여부를 묻지 않고 책임을 진다.

#### ④ 정신적 손해의 배상

매도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따라서 무과실책임에 의거하는 것은 아니다.

#### ⑤ 책임기간 및 소멸시효

제품의 결함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생명, 건강 또는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당해 제품의 사용기간 중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조 후 10년 간 청구할 수 있다.

### 2.3 일본의 PL법

#### 2.3.1 입법경위

일본에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가져온 사건은 1955년에 발생한 삼영비소 우유사건이 처음이었다. 그 후 1969년에 미국으로 수출된 결합자동차사건, 1969년 가네미 유증사건, 1971년 스몬사건, 1975년 크로로킨 사건 등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제조물책임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었다.

따라서, 입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하였고, 1973년에는 국민생활심의회가 제조물책임 제도를 포함하여 소비자피해구제에 대하여 심의

를 시작함과 동시에 1975년에는 관련 교수를 중심으로 제조물책임 연구회가 1972년부터 검토한 결과를 받아 제조물책임법 요강시안을 공표하였다.

1994년에 이르어 국민생활중시, 소비자중시의 사고가 종래 이상으로 강조되게 되었다는 점, 공적규제의 완화에 따른 제조자, 소비자 쌍방의 자기 책임원칙의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하다는 점, 제품수입이 대폭 증가한 점, EU지침에 의해 구주제국에 있어서 제조물책임법이 속속히 제정되고 있는 점 등을 배경으로 정당, 학계, 변호사회 등에서 법안이나 입법 제안 등을 잇달아 제출·공표하게 되었다.

수년간에 걸쳐 소비자 행정에 있어서 검토 과정였던 제조물책임법이 1994년 6월 22일에 참의원 본회의에서 전원일치의 찬성으로 통과되고 7월 1일 공포되었다.

#### 2.3.2 주요 내용

일본 제조물책임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목적 ② 정의(제조물 제조업자, 결함) ③ 제조물책임의 원칙 ④ 면책사유 ⑤ 기간의 제한 ⑥ 민법의 적용 등으로 본문 6개조와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다.

#### ① 목적

본법의 목적은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피해를 입은 모든 자를 보호한다. 따라서 소비자에 한정하지 않고 법인도 피해구제청구자가 될 수 있다. 나아가 국민생활의 안정·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 ② 정의(제조물, 결함, 제조업자 등)

제조물의 범위는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전기 등 무형의 에너지, 서비스는 제조물에서 제외되고 미가공의 농수축산물도 제조, 가공되지 아니한 동산이므로 제외된다.

결함의 정의는 "제조물의 특성, 통상 예견되는 사용형태 제조업자 등이 제조물을 인도한

시기, 기타 제조물에 대한 사정을 고려하여 제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것"을 말한다.

제조물책임의 책임주체 "① 제조업자, 가공업자, 수입업자 ② 스스로 제조물에 자기를 제조업자·수입업자로 이름·상호·상표 기타 표시를 한 자 또는 제조업자로 오인할 수 있는 이름 등을 표시한 자 ③ 제조물의 제조·가공·수입 또는 판매에 관한 형태 기타 사정으로 보아 그 제조물의 실질적인 제조업자로서 인정할 수 있는 이름 등을 표시한 자"가 포함된다.

### ③ 제조물책임의 원칙

제조업자 등은 제조물의 "결함"에 의하여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한 때에는 그에 의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조물책임법에서는 민법 제709조에 의한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책임요건 대신에 "제조물의 결함"을 책임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 피해자는 결함, 손해, 결함과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책임을 진다.

### ④ 면책사유

제조업자에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물책임의 면책을 인정하고 있다.

첫째, 제조업자 등이 그 제조물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없는 때에는 제조물책임을 지지 않는다(개발위험의 항변).

둘째, 다른 제조물의 부품·원재료로 사용되는 제조물의 결함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결함이 전적으로 부품·원재료를 사용하는 제조업자의 설계에 관한 지시에 따른 사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경우, 부품·원재료의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부품·원재료 제조업자의 면책).

다만, EU지침에서 규정한 것과의 차이는 부품·원재료 제조업자에게 일정한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본에서의 부품·원재

료 제조업자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볼 수 있다.

### ⑤ 제소기간 및 소멸시효

제조물책임의 소멸시효기간은 피해자가 손해 또는 배상의무자를 안 때로부터 3년이며, 제소기간은 제조업자가 그 제조물을 인도한 때로부터 10년으로 되어 있다. 다만, 제소기간에 있어서 신체에 축적된 경우에 신체의 건강을 해하는 물질에 의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견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따라서 의약품과 같이 장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나타나는 손해는 손해가 발생한 시점부터 제소기간을 기산하게 된다.

### ⑥ 민법의 적용

제조물책임에 대해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외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따라서 고시상계, 복수책임주체가 있는 경우의 연대책임, 면책특약을 한 경우의 효력배제 및 금전배상의 원칙 등에 대하여는 민법이 적용되게 된다.

## 2.4 중국의 PL법

중국의 제조물책임(PL)법인 중국의 제품품질법이 개정되었다. 동개정 법률은 제9기 전국인민대회 제16회 회의가 2000년 7월 8일에 채택한 것으로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종전의 제품품질법은 1993년 2월 22일에 공포되어 1993년 9월 1일에 시행되었다. 개정된 범위는 전체의 3분의 2에 미치고 조문은 51조에서 74조로 늘어났다.

### 2.4.1 중국 제품품질법의 개요

중국에 있어서 제품품질법은 전체 74개조에 이른다. 그 이유는 제조물 책임에 관하여 중국의 제품품질법이 보다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제품 품질법이 제품 품질의

감독관리제도에 관한 행정규정 및 형사처벌 관련 규정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개정 사항은 물론 중국행정기관에 의한 제품의 감독관리체제의 강화나 벌칙의 강화 등 행정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 ① 책임주체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제조, 가공, 수입업자(제조물책임법 제2조)가 책임주체이지만 중국의 제품품질법의 책임주체는 제조자뿐만 아니라 판매자도 포함되어 있다(제품품질법 제40조 내지 42조). 제조사의 책임에 관해서 중국의 제품품질법은 제품의 결함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1조). 이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며, 손해의 발생이 요건으로 되어있다.

#### ② 제조업의 면책사유

중국의 제품품질법에서는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에서는 결함의 존재를 알 수 없었던 경우에 배상이 면책되는 개발위험의 항변(제품품질법 제41조)이 있다. 이 점은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법과 같다.

#### ③ 제조물책임 소멸시효

중국 제품품질법에서는 손해를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2년, 제품의 인도로부터 10년으로 되어 있다(제품품질법 제45조). 일본이나 우리나라가 손해를 안 때로부터 3년으로 규정한 것보다는 짧게 되어 있다.

#### ④ 손해배상의 범위

구법 하에 있어서는 제품의 결함에 의해 상해를 발생시킨 경우의 의료비, 구조비, 상해자로 된 경우에는 생활보조비, 사망의 경우에는 장례비용, 구조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배상 등이 인정되었다(구제품품질법 제32조). 이번 개정에서는 추가적으로 간호비용, 후유 장해 배상금, 사망배상금이 추가되었다(제품품질법

제44조). 여기에 후유 장해 배상금으로는 상해에 의해 후유증이 남은 경우의 손실 이익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의미한다. 구법 하에서는 정신적 손해의 배상이나 위자료에 대한 규정이 없고, 1997년 3월 15일의 판례(가스 폭발사고에 의해 안면과 양손에 중화상을 입은 사건)를 선례로 위자료의 배상이 인정되도록 되었다. 이번 개정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앞의 후유 장해 배상금 및 사망배상금을 추가하여 조문상으로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였다. 정신적 손해의 배상액 수준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운영에 기대하는 바가 크고 현 단계에서는 명확하지 않다.

또한 배상에 관해서 종래는 민사책임보다 행정처벌이 우선하여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제조업자가 민사배상을 할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 개정에서는 위법 제조업자 등이 민사배상책임, 벌금 및 형사책임을 경합하여 부담하는 경우에 민사배상책임을 우선하여 부담한다라는 규정을 두었다(제품품질법 제64조).

#### ⑤ 제조물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

이 제품품질법이 중국에 있어서 제조물책임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이라고 할 수 있지만 중국에서 제조물책임에 관련하는 법률은 제품품질법만이 아니다. 다른 법률로 민법통칙(1986년 4월 12일 공포,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은 제품의 품질에 관한 권리침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제122조), 소비자권리보호법(1993년 10월 31일 공포, 1994년 1월 1일 시행)도 소비자가 권리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배상을 청구하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법제화하고 있다(동법 제11조). 또한 부정경쟁방지법(1993년 9월 2일 공포, 1993년 12월 1일 시행)은 타인의 등록상표의 도용, 허위선전의 금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5조, 제9조). <끝>